



정부조달·계약에 관한 법률(안) 요지

지난 7월8일 재무부는 지난해말 타결된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97년 조달시장개방에 대비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은 부처 및 업계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외국업체들에게 개방되는 56억 원 이상 공사입찰등에 대해서는 97년부터 적용된다.

이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현행 예산회계법에 정한 입찰·계약·하자보수·차액보증 등 각종 보증금 가운데 차액보증금을 폐지키로 했는데, 이는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낙찰제를 원칙으로 한 적격낙찰제로 전환

되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 이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등 예외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재무부는

①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② 입찰공고에 명기된 특정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③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했다.

1. 제안이유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따른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하여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과 정부조달 및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조달협정 및 국제규범을 반영,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신속적이고 효율적인 조달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산회계법 제6장 계약편을 대체하는 법률을 별도 제정하고자 함.

2. 법률(안)의 주요내용 요약

[가] 정부조달에 있어 국제입찰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현 행 (예산회계법)	제 정 (안)
<신 설>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 계약의 범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물품, 공사, 용역의 조달을 위한 계약으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임 -재판매관련구매, 중소기업 제품구매, 농·수·축산물구매는 그러하지 아니함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협정 적용대상이 아닌 조달도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함.

(1) 제정이유

㉠ 정부조달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조달 협정 협상시 우리나라가 양허한 내용을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의 범위로 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함.

㉡ 국제입찰기준가액은 GATT 정부조달위원회의 결정(GPR/M/24/ANNEX 5)에 따라 각 부속서에 SDR로 표시된 협정적용 기준가액을 매2년마다 자국 통화로 고시하여야 하므로 재무부 장관이 매2년마다 고시할 계획임.

㉢ 우리나라의 양허안에서 협정의 적용을 배제한 조달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의 범위가 아님을 명시하기 위한 것임.

㉣ 협정적용대상이 아닌 조달일 경우에도 발주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

제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조달협정문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이 실시하는 기준가 이상의 조달에 대하여는 국제입찰을 하여야 함(협정문 제1조 제1항 및 제4항)

[4] 계약의 원칙(안 제4조)

현 행 (예산회계법)	제 정 (안)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함(제73조) <신 설>	-좌 등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계약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국적이나 물품의 생산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됨.

(1) 제정이유

㉠ 계약의 일반원칙은 현행 예산회계법과 동일하게 규정

㉡ 협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조달협정회원국의 물품이나 서비스, 이를 공급하는 협정회원국의 업체에 대하여 내국인 대우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2) 정부조달협정문

㉠ 협정의 적용을 받은 조달의 경우 타 회원국의 물품이나 서비스, 이를 공급하는 타 회원국의 공급자에게 내국인 대우를 부여하여야 함(협정문 제3조 제1항)

㉡ 물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가 협정회원국일 경우 이를 이유로 국내 공급자와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협정문 제3조 제2항)

[다] 계약사무의 위임(안 제5조)

현 행 (예산회계법)	제 정 (안)
-계약관의 임명(제75조) -계약관 사무의 대리인과 분임(제113조) -회계관리공무원의 임명 특례(제114조) -타기관에 계약사무의 위	-계약관의 임명 및 계약관 사무의 대리분임 -타 중앙관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계약관 사무의 위임 -계약관 임명에 같음한

임(제120조) -계약관 임명에 같은 관 직의 지정(제75조제2항, 113조제3항,제114조제2항)	관직의 지정
--	--------

○제정이유

계약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계약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항과 같게 규정

[라] 계약의 방법(안 제6조)

현행 (예산회계법)	제정(안)
-일반경쟁이 원칙임 ○ 계약상의 성질·목적 등에 따라서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제76조제1항) ○ 수의계약사유 열거(제76조제2항)	-일반경쟁이 원칙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삭 제>

(1) 제정이유

현행 예산회계법의 계약의 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되, 원활한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의계약 사유는 대통령령에 규정

(2) 정부조달협정문

㉠ 계약의 방법은 공개입찰, 선택입찰, 제한입찰이 있음. (협정문 제7조 제3항)

㉡ 제한입찰의 사유(협정문 제15조)

[마] 입찰공고(안 제7조)

현행 (예산회계법)	제정(안)
<신 설>	-모든 경쟁입찰은 공고(통지)를 하여야 함. -입찰공고(통지)의 내용·시기·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 제정이유

정부조달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모든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공고(통지)를 하게 함으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함.

(2) 정부조달협정문

제한입찰을 제외한 협정 적용을 받는 모든 조달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협정문 제9조 제1항)

[바] 각종 보증금(안 제8조, 제11조, 제178조)

현행 (예산회계법)	제정(안)
-입찰보증금(제77조) -계약보증금(제79조) -하자보수보증금(제85조) -차액보증금(제93조)	-입찰보증금(제8조) -계약보증금(제11조) -하자보수보증금(제17조) ※차액보증금 폐지

○제정이유

㉠ 낙찰자 결정방법의 변경으로 불필요하게 된 차액보증금을 폐지하되 기타 보증금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

㉡ 덤핑입찰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제도로 대체

[사] 낙찰자 결정(안 제9조)

현행 (예산회계법)	제정(안)
<신 설>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로 함. 다만, 계약의 목적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①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②입찰공고에 명기된 특정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③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

(1) 제정이유

㉠ 정부조달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고, 국제규범에 맞게 규정

㉡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 이외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게 함.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등)

(2) 정부조달협정문

정부조달 · 계약에 관한 법률(안) 요지

조달기관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입찰자로서 제출한 입찰서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하거나 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특정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함. (협정문 제13조 제4항 6호)

[아] 계약서의 작성(안 제10조)

현행 (예산회계법)	제정(안)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됨(제78조제2항, 제91조제2항)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됨.

○제정이유

서명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자] 부정당 업자 제재 제도 개편 (안 제27조)

현행 (예산회계법)	제정(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제95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한 당해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게 하고 -기타기관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제한할 수 있게 함.

○제정이유

㉠ 현행 규제완화 차원에서 부정당 제재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에서 이를 참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당해 기업은 도산·부도 등이 따르게 되므로 오히려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함.

[차] 정부조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 제28조-제31조)

1) 조정의 신청(안 제28조)

현행 (예산회계법)	제정(안)
<신설>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과정에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수정을 위한 조정신청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함.

(1) 제정이유

㉠ 정부조달협정문 내용에 따른 분쟁처리절차를 정함.

㉡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 관련된 사항만을 조정 신청의 대상으로 함.

㉢ 일차적으로 발주기관의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하도록 하여 심사·조정지연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이익을 방지.

㉣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정신청기한을 정함.

(2) 정부조달협정문

㉠ 회원국들은 특정조달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급자들이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정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비차별적으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협정문 제20조 제2항)

㉡ 회원국은 이의를 제기하는 공급자가 당해 조달기관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협정문은 제20조 제1항)

㉢ 공급자들은 불만의 근거가 확인되거나 확인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함. (협정문 제20조 제5항)

2) 정부조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29조)

현행 (예산회계법)	제정(안)
-재무부에 특례 조달분쟁심사위원회 설치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재무부에 정부조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 제정이유

발주관서에서 조정하지 못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설치되어 있는 분쟁심사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2) 정부조달협정문

이의신청은 해당 조달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기구에 제기하여야 함. (협정문 제20조 제6항)